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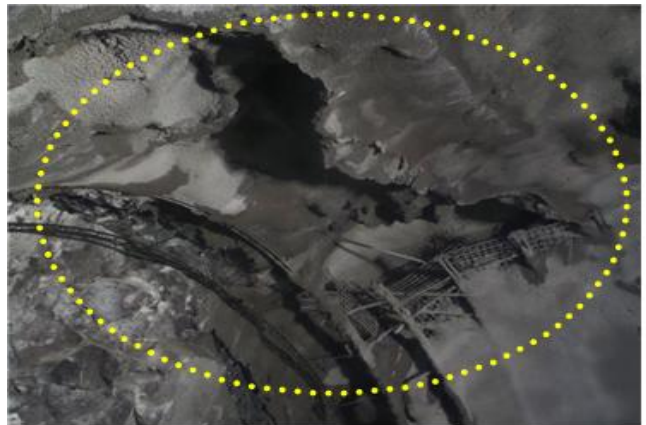
# 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## [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(2공구) 건설공사]

- 점검일시 : 2018.04.24 (화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정진혁, 박수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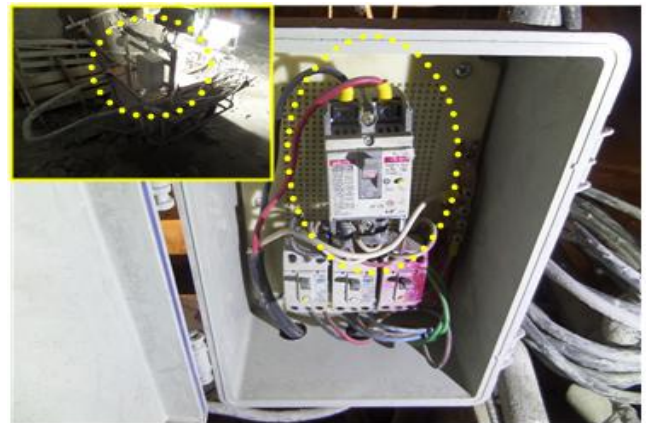
### ○ 터널 안전(방재시설부)

- 차량횡갱에서 연결된 인천방향 본선은 양방향으로 굴진 준비중으로 막장 인근에 여굴이 크게 발생되어 여굴처리중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고 관련 작업자 교육요망
  - ① 최대한 굴착면과 격자지보 사이가 밀실한 구조가 되도록 보강요망
  - ② 고소작업대(차진카)를 타고 올라가는 작업자는 보안경, 안전모, 안전대 등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낙하 및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요망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(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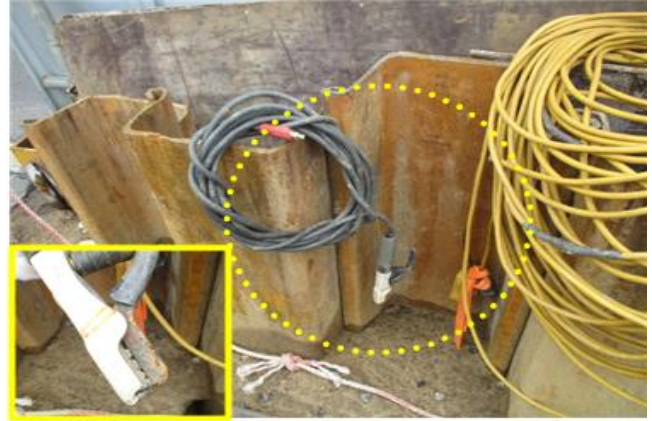
### ○ 감전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본선 막장면에 사용중인 투광등의 소분전반내수전 충전부 방호가 안된 상태로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터널에 사용중인 이동식 투광등 전수조사하여 조치요망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(전기 기계/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)



○ 감전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램프-A구간에 있는 용접용 홀더는 절연물이 손상되어 있으니 보완 후 사용바람.  
 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021(용접작업 및 용접기)



○ 전도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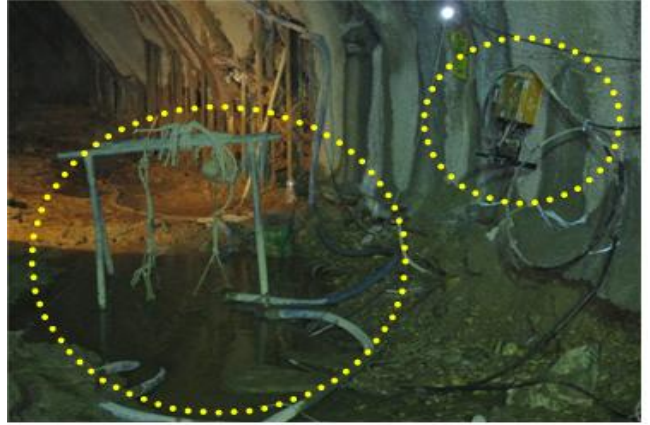
- Ramp C 터널 굴진으로 배토된 토사를 건조하기 위한 사토장 임시구조물은 현재 토압과 장비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레이커 지지의 형태로 붕괴될 경우 주변을 보행하는 근로자에게 전도되거나 장비가 전도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요망  
 - 또한 경사부에 하중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레이커는 미끄러지는 방향에 스톱퍼 등을 추가 보강요망  
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(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)



○ 전도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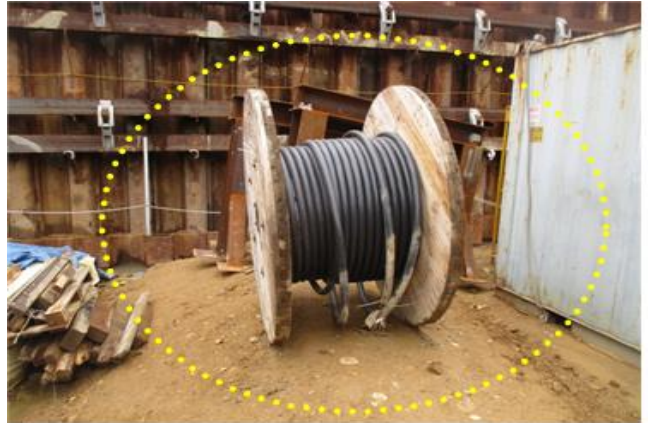
- 램프-B, D 터널 굴착구간에 설치된 침사지 및 집수정은 주변에 안전난간등 방호시설을 설치하고 점검 통로 및 주변시설물(분전함)을 이용할 수 있는 발판설치 후 관리바람.  
 ※ 건설안전기본지침 터널-005(배수작업)





○ 전도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램프-D구간 지상에 보관중인 케이블은 경사진 구간에 적치되어 있어 전도 및 구름등의 위험이 있으니 편평한 구간으로 이동적치 바람.  
 ※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



○ 건설기계 안전(방재시설부)

- Ramp C 집토시설에 물이 빠진 슬러지 토사를 옮기기 위해 토조와 토조 사이에 위치한 굴삭기의 하부지반이 슬러지 토사를 쌓아 올라간 상태로 저면이 붕괴될 경우 장비전도의 위험이 있으므로 대책 강구요망  
 - 또한 근로자 보행통로로 굴삭기 버킷이 회전할 경우 낙하, 비래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회전을 도로사면 쪽으로 돌도록 관리요망  
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(전도 등의 방지), 제200조(접촉 방지)



○ 품질관리(방재시설부)

- Ramp C 시트파일과 구조체 사이가 협소하여 물다짐을 할 경우 하부에서 배수가 원활히 이뤄져야 다짐효과가 발휘될 수 있으므로 배수 대책을 마련 후 작업요망  
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(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)



○ 기타 안전관리(방재시설부)

- 본선터널 구간 양방향 모두 500m이상 굴진된 상태이나 비상시 작업자의 탈출을 돕는 비상등이 현재까지 준비중으로 미설치된 상태이므로 조속히 설치요망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(관리감독자의 유해/위험 방지 업무 등)



○ 기타 안전관리(방재시설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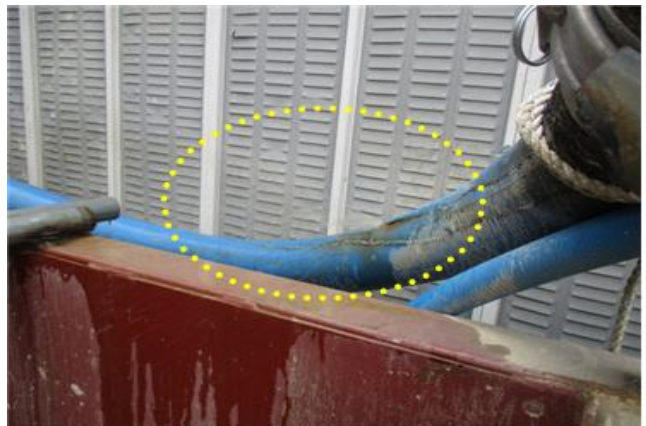
- 램프-D구간 상부 자재 적치구간의 우수로 인해 유입된 토사 및 흙탕물은 즉시 정비하고 배수상태 관리 바람.

※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(작업장의 청결)



○ 기타 안전관리(방재시설부)

- 램프-B구간 상부에 설치된 배수펌프 호스는 손상이 되어 물이 유출되고 있으니 보완 후 사용바람.



○ [모범사례]기타 안전관리(방재시설부)

- 카, 대인 리프트가 설치된 수직구에서 본선으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터널 종단도와 작업위치를 표시하여 신속한 재해 대비를 위해 노력한 모범사례

